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8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4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 안 사 유

-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편성권자 변경(도지사 → 소방서장·군수)에 따라 자녀장학금 예산 편성자료를 이에 알맞게 조정하기 위함.

2. 주 요 골 자

- 장학금 예산편성권자 조정 (제7조)
 - 현행 도예산에서 편성 → 임용권자 소속기관(도·군)에서 편성
-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정 (제10조)
 - 현행 도에 설치 → 임용권자 소속기관 (도·군)에 설치

3. 제 안 근 거

- 내무부 시·도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준칙(안)

4. 관계법령 발췌 “별첨”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) ① 임용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 제1항중 "도지사는 도에"를 "임용권자는 소속기관에"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1995. 1. 1부터 시행한다.